

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(FAQ)

Q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?

A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

Q 휴직자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?

A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 등을 해야 하며,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

Q 외부강의등의 횡수제한은 없는지?

A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횡수제한은 없으나,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

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·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?

A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·숙박비 등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

Q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?

A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(다만,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), 회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

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?

A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

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?

A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

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?

A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,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. 다만,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

Q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(주제)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?

A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(주제)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

Q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?

A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(주제)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

Q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?

A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교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됨